

의안번호	2214571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6.1.14.
추계번호	25D644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의 차량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2억 6,5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453	453	453	453	453	2,265	453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국가는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여객 및 차량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운임비용(80%)에서 지원 중인 운임을 차감한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산정함
- 다만, 여객 운임의 경우 운임 구간별로 이미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며 지원율이 80% 미만인 운임구간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여객 운임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차량운임 지원액만 추계 대상으로 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 운임이 8,34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해 50%를 지원하고(섬 주민 자부담액이 2,5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외 운임 구간에서는 자부담액 5~7천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정규운임금액의 구간 단위마다 도서민이 부담하는 운임이 정액이기 때문에 정규운임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지원율이 높아지는 구조임

[표 2] 여객운임 구간별 지원 현황

여객 운임	8,340원 미만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도서민 부담	2천500원 이하	5천원	6천원	7천원
지원율	50~70%	40~83%	80~88%	86%~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차량 운임은 차종별로 50% 이내에서 정규운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차량 운임의 전체 대표금액 대비 지원율은 38.9%¹⁾임

1) 38.9%=6,653,432,900원(운임 지원액)÷17,092,349,132원(전체 대표실적)

[표 3] 차종별 운임지원 현황

차종	5톤 화물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지원율	50%	30%	20%

자료: 해양수산부

-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의 2024년 차량 매표대금 총액은 11억 3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로 운임 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현 지원을 대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41.1%를 추가재정소요로 산정함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의 차량운임을 80%까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2억 6,5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총 매표금액(a)	1,103	1,103	1,103	1,103	1,103	—
	추가지원(b)	41.1%	41.1%	41.1%	41.1%	41.1%	—
	추가재정소요 (a×b)	453	453	453	453	453	2,2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 섬 현황(43개, 2024.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4,875
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1,20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221
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1,981
5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104
6	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2
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청도	262
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도	50
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왕등도	22
10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485
11	전라남도	여수시	서도	596
12	전라남도	여수시	동도	246
13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180
14	전라남도	영광군	대석만도	11
15	전라남도	영광군	죽도	4
16	전라남도	영광군	횡도	3
17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100
18	전라남도	진도군	동거차도	119
19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98
20	전라남도	진도군	상하죽도	12
21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도	93
22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조도면)	39
23	전라남도	진도군	곽도	21
24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1,719
25	전라남도	신안군	장도	80
26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50
27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439
28	전라남도	신안군	대둔도	279
29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69
30	전라남도	신안군	중태도	11
31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	116
32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386
33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70
34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	194
3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9,042
36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	1
37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34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추자도	922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635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140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	1,618
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216
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89

자료: 행정안전부